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9. 30.(수))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81-1번지 행복주택 110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신청(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9.30.(수)이며, 이는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임대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 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10.01.~2007.09.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2019.09.30. 이후 혼인신고)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61.09.30. 이전)
-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청약접수' 내용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우선공급 배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태	공급 계층	최대 거주 기간 (년)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54)	일반 공급 (56)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21A	대학생	10	5	28	21.52	14.2666	4.4816	13.2346	53.5028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개별 난방	'28.03 (예정)
	청년	10	23								
	주거급여 수급자	20	3	3							
26A	주거급여 수급자	20	2	3	26.95	17.4776	5.6124	16.5740	66.6140		
26AS	고령자 (주거약자용)	20	5	5	26.95	17.4776	5.6124	16.5740	66.614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외)	20	1	1	26.95	17.4776	5.6124	16.5740	66.614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14	15	16	44.68	27.8825	9.3046	27.4778	109.3449		

- 공급형태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입주자격 검증대상)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 중, 입주자격 검증 결과 최종 적격자는 전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 또는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8년 3월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태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AS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65세 이상인 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태	공급 계층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21A	대학생· 청년(소득無)	32,708,000	1,635,000	31,073,000	166,260	(+) 11,000,000	43,708,000	111,260
						(-) 26,000,000	6,708,000	242,090
	청년(소득有)	34,632,000	1,731,000	32,901,000	176,040	(+) 13,000,000	47,632,000	111,040
						(-) 28,000,000	6,632,000	257,700
	주거급여 수급자	28,860,000	1,443,000	27,417,000	146,700	(+) 7,000,000	35,860,000	111,700
						(-) 23,000,000	5,860,000	213,780
26A	주거급여 수급자	36,150,000	1,807,000	34,343,000	183,760	(+) 15,000,000	51,150,000	108,760
						(-) 29,000,000	7,150,000	268,340
26AS	고령자 (주거약자용)	45,790,000	2,289,000	43,501,000	232,760	(+) 24,000,000	69,790,000	112,760
						(-) 37,000,000	8,790,000	340,670
26B	고령자	45,790,000	2,289,000	43,501,000	232,760	(+) 24,000,000	69,790,000	112,760
						(-) 37,000,000	8,790,000	340,67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1,560,000	4,078,000	77,482,000	414,590	(+) 49,000,000	130,560,000	169,590
						(-) 66,000,000	15,560,000	607,090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써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로,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적격]**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①-㉔와 ②~④를, 취업준비생인 경우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㉔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8,000,000원	-
	2인	0인	110%	108,000,000원	-
		1인	120%	119,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8,000,000원	-
		1인	110%	119,000,000원	-
		2인 이상	120%	130,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우선공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요건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외)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가주지 및 거주 기간	대학생 부모 모두 인천광역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인천광역시 서해구 외의 인천광역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서해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의 거주시작일)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에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에만 적용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1A형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㉔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10.01.~2007.09.30.)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576,03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1,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276,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276,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301,000,000원	54,51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51,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276,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276,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301,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요건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 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의 거주시작일)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
 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6000501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정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21A형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인 경우 ①-㉔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①-㉔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0%	10,562,642원 이하	120%
5인	9,326,985원 이하	100%	11,192,382원 이하	120%
6인	9,906,263원 이하	100%	11,887,51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금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	2인	0인	13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2인 이상	140%	413,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212,778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점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점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 를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우선공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 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우선공급대상자 요건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의 거주시작일**)
-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6000501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 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요건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70세 이상 ~ 75세 미만	70세 미만 ~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 1~7급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의 거주시작일**)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요건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의 거주시작일**)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6.10.13(화) 10:00 ~ 10.15(목) 16:00	'26.10.26(월) 17:00 이후	'26.10.27(화) 10:00 ~ 10.30(금) 17:00	'27.3.18(목) 17:00 이후	'27.3.30(화) 10:00 ~ 4.1(목) 16:00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제출 (MyMy 서비스 이용)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또는 ②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26.10.30.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담당자 앞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첨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현장접수] '26.10.14.(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현장계약] 계약일자 및 장소는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추후 개별안내 예정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 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현장접수 일자 : **2026.10.14.(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현장접수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실(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현장 청약접수 시,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5. 신청서류** 참조)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 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택 1)	① 인터넷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서류제출 MyMy 서비스 이용)
	② 등기우편 (※ 일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서류제출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참조)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갑니다.
-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임대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소득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소득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의 출처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 거절 및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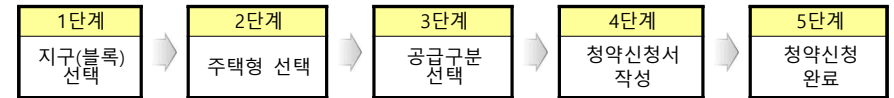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앱 (“LH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 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6.10.13.(화)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026.10.15.(목) 16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기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 (단,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일 시	2026.10.14.(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장 소	LH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실(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약 도	
대중교통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와 「5. 제출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분이어야 함(대리발급분 인정불가)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은 신청자 본인을 뜻함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장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6.10.26.(월)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 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택 1)	① 인터넷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서류제출 MyMy 서비스 이용)
	② 등기우편 (※ 일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서류제출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참고)	

■ 서류제출 방법 (①인터넷 서류제출 또는 ②등기우편 접수 중 택1)

① 인터넷 서류 제출 (LH청약플러스 온라인서류제출 MyMy 서비스 이용)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①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②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 (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신청자 및 세대원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5. 신청서류」 중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이용가이드 영상 참고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LH 공식 Youtube 채널에 있는 MyMy서비스 가이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서류 제출 기간 : 2026.10.27.(화) 10:00 ~ 2026.10.30.(금) 17:00 - 인터넷 서류 제출 방법(LH청약플러스 온라인서류제출 MyMy 서비스 이용)	
• (신청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로그인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신청자는 청약플러스 내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온라인서류제출(최종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자 동의 : 신청인이 청약플러스에서 우선 동의 절차 진행 후 세대원에게 문자 발송하여 동의 요청 → ② 세대원 동의 : 세대원 전원이 청약플러스 로그인하여 동의절차 진행 → ③ 온라인서류제출(최종제출) : 세대원 전원 동의 후 MyMy서비스 미연계 서류(ex. 혼인관계증명서 등) 업로드 후 서류제출 마무리	
- 인터넷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온라인 서류제출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혼혼부부제출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파일 업로드 필수) •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 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 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 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26.10.30.)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6.10.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불투명하고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적격 당점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1~7 반드시 확인)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비 고
[필수제출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2)	○ (전자 서명)	• (작성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필수제출 2]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4)	○ (전자 서명)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MyMY) 온라인 제출 시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3단계(온라인서류제출)’에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직접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제출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1-3)	○ (전자 서명)	
[필수제출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양식 1-1)	○ (전자 서명)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필수제출 5]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표기'로 발급★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필수제출 6]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표기'로 발급★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추가 제출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필수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MyMY)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된 가족 1인(부, 모, 배우자, 자)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이름을 잘못 적거나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 이름을 적어 서류 발급에 실패할 경우 신청자가 직접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X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X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2)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X	해당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X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X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X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O		
청년 계층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O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X	지방고용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O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X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O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대상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청년 계층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O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 으로 발급)	O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X X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O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X	해당직장 국세청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X	해당학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X	병무청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O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X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 로 발급)	X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3-1)	O (전자서명)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3-2)	O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X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1)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 로 발급), 2)주민등록표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 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X	행정복지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O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X X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O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X	국세청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X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O	행정부지센터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O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후 등록자)	O	국가보훈부
고령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O	
		· (필수 제출)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O	행정부지센터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후 등록자)	O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O	
		- 5.18민주화운동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O	국가보훈부
주거급여수급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O	행정부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O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7.3.18.(목) 17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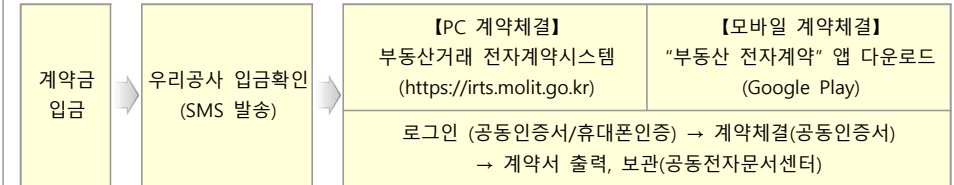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 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와 관련하여, 청약 신청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 직접 변경하는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및 입주안내 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 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 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키포출일(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 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2027.3.30(화) 10시 ~ 4.1(목) 16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 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계약담당부서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4),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분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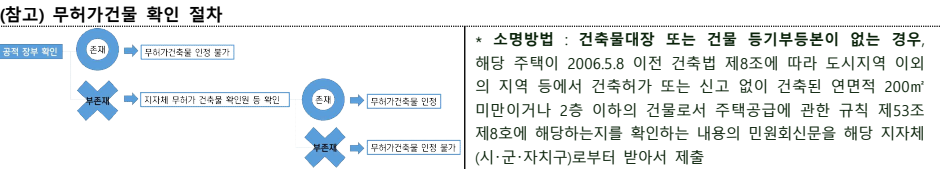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어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등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입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 해제, 갱신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 9월 현재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을 입주자격으로 하므로,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 및 그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 및 단지외부 여건 - 단지계획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높이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측 및 북서측에 차량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지구 북측 및 동측 일부구간 보행자 도로가 설치됩니다. - 남서측 및 남동측에 공동주택, 북서측에 저층 상가 건물이 바로 인접하여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도로는 갯길주차 등 불법주차가 빈번한 지역이며, 보행자도로 미설치 구간이 다수 분포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지 동측 도로에 접하여 석남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공원 지하에 유료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가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지자체시설(공영주차장, 상생협력상가,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며, 아파트 부대시설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지자체시설(1층: 상생협력상가, 2층: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며, 아파트 부대시설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 아파트 102동 3층은 PIT층 입니다. - 아파트 101동 8층에 공동보육실, 102동 11층에 체력단련실이 설치 됩니다. - 시설물의 위치, 구조, 색채 및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준높이 및 트랜치에서 차량 통과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뿔철로 시공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복합문화시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시공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단지 내 지상 1층에 주거용 1개소, 비주거용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는 지상 주차장 2개소,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근 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 기타공용,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층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됩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등 구조물로 인하여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설치로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저수조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장 환기팬룸, 제연팬룸, 정화조, 지열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및 환풍 상부 등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시야차폐와 환기팬 가동
-----------	--

	시 소음, 먼지, 매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보행통로 보행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에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구간에 배수트렌치가 설치되며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부에는 생울타리 담장 설치 및 인접건물 기존 담장이 존치될 예정이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표시, 아파트 문양, BI로고, 벽체줄눈 및 색채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심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 및 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과 마감재 색상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시공 계획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획 및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 및 관리사무소의 실외기실이 현장 여건상 외부(1층)에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매연, 먼지 등이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및 마감, 외부 색채,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야외 휴게공간,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과 연결한 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에서는 조경 수목 식재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단지 내 조경설계 진행 중으로 추후 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함은 각 동 행복주택 로비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101동 1층, 102동 1층 행복주택 로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와 인접되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었고 해당공법 적용 시 공공 전기요금에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단지 내 주
--	--

	차가능대수는 총 102대로 지상 21대(상가 3대, 공용주차장 18대), 지하 81대(아파트 52대, 복합문화시설 20대, 공용주차장 9대)입니다.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기준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여건 • 본시공 시 시공오차 등으로 인하여 팬플릿 등에서 확인 가능한 치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팬플릿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 품질, 품귀, 생산업체 부도, 납품포기(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플릿에 기재된 마감재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며, 주택형별에 따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로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결로저감재는 외부와 직접 면한 부위에만 시공되고(실외기실에는 미설치) 수성페인트로 마감되며, 결로저감재를 시공함에 따라 부착폭만큼 발코니의 일부 사용면적이 감소됩니다. • 실외기실은 외기 온도차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결로 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도장 페인트 오염 유의) • 발코니는 비단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창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유니트와 덕트는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됩니다. 실내환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트리 등에는 배기 디퓨저만 설치)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1타입은 세탁기 설치공간이 주방에 마련되어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6타입, 44타입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워시타워 일부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수동형)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배수관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관 주변 발코니 천장 마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조닝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개폐가능형 ABS원형환기구가 설치(실외기실 제외)되어 환기시에는 개방하고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폐쇄할 수 있으므로 동절기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석재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시공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을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고,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주방가구 상부 및 후면, 불박이장의 상·하부 및 후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주방가구 하부에는 수성페인트가 시공됩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실, E/V홀, 욕실 등의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기준과 달리 현장여건 및 시공과정, 자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지하층의 엘리베이터 홀 바닥은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석재(혼드)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표현된 벽, 바닥부위 줄눈 및 코킹 등은 실제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실 커튼박스 깊이 및 길이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소형냉장고 및 가스쿡탑은 21타입만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쭉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팬 작동 시 역풍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건설자재 품귀 현상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
--	--

	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설계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에 명기된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은 단순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모호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전용부, 공용부, 지하주차장, 단지내외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애매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상행위는 우리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기준 충족 여부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적합
창의 기밀성능		적합
고단열·고기밀 강제창호		적합
열원설비		적합
창 면적비		적합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적합
	기계부분 설계기준	적합
	전기부분 설계기준	적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반도건설 (605-81-87475) 정인건설(주) (608-81-41288) 국기건설(주) (222-81-04584)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해우이엔지 주식회사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에만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주거약자용 주택 외 일반세대에만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세단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유의사항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7. 3. 30(화) ~ 4. 1(목)]
- ▶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람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추후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LH 인천지역본부 약도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 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3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